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

주의사항 : 이 등기기록은 주식회사변경등기사건(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643752호)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.

등기번호	555762	
등록번호	110111-5557628	
상 호	주식회사마스텐제십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· ·
본 점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20-21층(서초동, 교보생명보험(주) 서초사옥)	2019.11.20 변경 2019.12.03 등기
공고방법	이 회사의 공고는 한국일보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머니투데이와 한국일보에 게재한다.	· · · ·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· · · ·
발행할 주식의 총수	100,000,000 주	· · · ·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	변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
발행주식의 총수	7,250,000 주	2015.11.02 신청
보통주식	2,900,000 주	착오
종류주식	4,350,000 주	2017.09.29 등기
자본금의 액		
금 36,250,000,000 원		
목 적 이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,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, 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 - 부동산의 취득, 관리, 개량 및 처분 - 부동산의 개발 - 부동산의 임대차 - 증권의 매매 - 금융기관에의 예치 - 지상권,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, 관리, 처분 -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, 관리, 처분		
임원에 관한 사항 감사 이석연 690113-***** 2017 년 09 월 29 일 중임 2017 년 09 월 29 일 등기 2020 년 09 월 29 일 중임 2020 년 10 월 08 일 등기		

등기번호	555762
2023 년 09 월 27 일 중입	2023 년 10 월 10 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김대기 741213-*****	
2023 년 09 월 27 일 취입	2023 년 10 월 10 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김상일 731215-*****	
2023 년 09 월 27 일 취입	2023 년 10 월 10 일 등기
사내이사 박영희 750103-*****	
2024 년 04 월 25 일 취입	2024 년 05 월 03 일 등기
대표이사 박영희 750103-*****	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, 329동 1901호(원문동, 래미안 슈르)
2024 년 04 월 25 일 취입	2024 년 05 월 03 일 등기

종류주식의 내용
종류주식

- ①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, 의결권을 가지며, 그수는 최대20,000,000주 이하로 한다.
- ②회사는 매 결산기에 종류주식의 발행가액의 연 4.50%의 비율로 해당 결산기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종류주식에 배당하고, 그 후 남은 이익은 보통주식에 배당한다.
- ③어느 영업연도의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우선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누적된 미배당분(이하 “누적 미배당분”)을 다음 영업연도의 이익배당시에 우선적으로 배당한다.
- ④종류주식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1기 종류주식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청약금 납부 익일부터 당해 회계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
-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를 실제 개시하는 날(이하 “임대개시일”) 전일까지는 이익배당은 없는 것으로 한다.
- ⑥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,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(실권주의 배정 포함)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- 2015 년 09 월 18 일 신청착오 2017 년 09 월 29 일 등기

기 타 사 항

1. 주식의 양도
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015 년 06 월 16 일 변경 2015 년 06 월 18 일 등기
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
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산한다.
- 1.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
 - 2.주주총회의 결의
 - 3.합병
 - 4.파산
 - 5.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
 - 6.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의 취소

등기번호	555762
7.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8.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2024 년 09 월 30 일 변경 2024 년 10 월 04 일 등기	
회사성립연월일	2014 년 11 월 06 일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14 년 11 월 06 일 등기

— 이 하 여 백 —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수수료 700원 영수함

열 람 용

신청사건처리중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